## 1. 개정이유

기존 유독물질의 정의를 삭제하고,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 유해성미확인물질의 정의가 신설되었으며, 신규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 전에 환경부장관에게 등록 또는 신고해야 하는 기준이 변경되는 등의 내용으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232호, 2024. 2. 6. 공포, 2025. 1. 1. 및 2025. 8. 7. 시행)됨에 따라, 유해성미확인물질의 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가. 유해성미확인물질의 기준 신설 (제2조의2 및 별표1의2 신설)

- 법 제2조제10호의3에서 유해성미확인물질의 정의가 신설됨에 따라 유해성미확인물질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함

나. 신규화학물질 신고 업무의 위탁 기관이 한국환경공단으로 개정됨에 따라 신고 관련 사항 개정 (제6조의3, 제11조의2, 제15조의3 개정, 제26조의2 및 별표7의2 신설)

- 신규화학물질의 신고 업무의 위탁 기관 변경사항을 관련 규정에 반영하고, 신고 시 제출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소유하고 있는 자료 뿐 아니라 확인한 자료까지 확대
- 법 제2조(정의) 개정으로 유해성미확인물질의 정의가 신설됨에 따라 변경신고 요건에 유해성미확인물질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를 추가
- 법 제19조의3(신고 시 제출된 화학물질 자료의 검토) 신설에 따라

신고 시 제출된 자료의 적정성 검토 방법을 규정하고, 적정성 검토 결과를 관계 기관에 통지하는 등 후속 절차 규정

다. 법 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사항 반영 (안 제25조, 제34조, 제35조, 제38조, 제40조 개정)

- 법 제2조(정의) 개정에 따라 기존 유독물질의 정의가 삭제되고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의 정의가 신설되고, 유해화학물질의 정의가 삭제됨에 따라 용어 변경사항 반영

라. 화학물질의 정보제공 및 정보 공개의 방법에 법 개정 사항 반영(제35조, 제37조, 제51조 개정, 제51조의2 신설, 별지 제42호 신설)

- 법 제29조제1항제3호 신설로 화학물질의 정보제공 대상에 유해성미확인물질이 추가되어 유해성미확인물질의 정보제공에 대한 사항 규정

- 화학물질의 정보 공개 범위와 공개된 정보의 수정·보완 절차 등을 규정하고 관련 서식 신설

마. 신규화학물질의 등록 및 신고기준 조정 및 유해성미확인물질 정의 신설 등 법 개정에 따른 시험자료 제출방법(별표1), 화학물질 등록 통지서 등 관련 서식 개정 (제5호의3, 제5호의4, 제5호의5, 제12호, 제16호, 제17호, 제25호, 제26호, 별지 제4호 개정)

바. 수입자 정보는 화학물질 등록·신고시 제출하는 정보이며, 수입자가 변경되면 변경신고를 통해 관리하고 있으므로 자료보호 또는 자료보호기간 연장 요청시 수입자 작성란 삭제 (별지 제37호 서식 개정)

사.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선임 또는 해임 사실에 관한 신고의 접수 권한·업무를 기존 국립환경과학원장, 화학물질안전원장, 지방환경관서의 장, 한국환경공단에서 한국환경공단으로 일원화하는 내용 반영 (제49조 개정)

아. 법 제43조에 따른 사업자 등에 대한 출입·검사의 주체를 환경부장관,

국립환경과학원장, 화학물질안전원장에서 환경부장관과 지방환경관서의 장으로 개정 (제52조 개정)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환경부령 제 호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에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유해성미확인물질의 기준) 법 제2조제10호의3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1의2에 해당하는 기준을 말한다.

제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화학물질안전원장”을 “공단의 이사장”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소유하고 있는”을 “소유하거나 확인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담당 공무원은”을 “담당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같은 조 제5항 중 “화학물질안전원장”을 각각 “공단의 이사장”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연간 100킬로그램 이상 1톤 미만의 신규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기 위하여 2025년 1월 1일 이전에 법 제10조제6항에 따라 화학물질을 등록신청하여 등록이 완료된 자는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11조의2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위해성이 변경된”을 “위해성

에 관한 정보가 새로 확인된”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화학물질안전원장”을 각각 “공단의 이사장”으로 한다.

다. 유해성미확인물질 중 화학물질의 특성 또는 유해성에 관한 새로운 정보가 확인되어 제2조의2에 따른 유해성미확인물질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제15조의3 중 “소유한 자료”를 “소유하거나 확인한 자료(그 출처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25조제1항제3호 중 “유해화학물질”을 “법 제2조제6호부터 제6호의3까지에 따른 인체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및 생태유해성물질(이하 “인체등유해성물질”이라 한다) 중 어느 하나”로 한다.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신고 시 제출된 화학물질 자료의 검토 등) ① 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자료의 검토 방법은 별표 7의2와 같다

② 공단의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19조의3제2항에 따라 유해성 시험자료를 생산할 수 있다.

1. 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 분류・표시 자료의 검토 결과 유해성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화학물질로서 유해성평가에 필요한 신뢰성 있는 시험결과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등록대상화학물질로 지정하여 해당 시험결과를 기업이 제출하

도록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 한정한다)

2. 그 밖에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신고된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공단의 이사장이 유해성 시험자료의 생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공단의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적정성 검토 결과를 해당 물질을 신고한 자 및 국립과학원장과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④ 공단의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적정성 검토 결과 중 국내외 정부 또는 국제기구에서 공개한 유해성 평가 결과를 통하여 확인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대한 유해성정보가 있을 경우 해당 물질을 신고한 자에게 이를 활용하여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34조제1항제2호 중 “유해화학물질”을 “법 제2조제7호부터 제9호까지에 따른 허가물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로 한다.

제35조제1항제8호 중 “유해화학물질”을 “인체등유해성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유해화학물질”을 “인체등유해성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별표 7에 따라 건강 유해성 또는 환경 유해성이 있는 것으로 분류되는”을 “다음 각 목의”로 하고, 같은 호에 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별표 7에 따라 건강 유해성 또는 환경 유해성이 있는 것으로 분

류되는 화학물질

나. 유해성미확인물질

⑤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유해성미확인물질이 들어있는 혼합물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별표 7에 따라 건강 유해성 또는 환경 유해성이 있는 것으로 분류되는 함량 기준 미만 함유된 경우에는 제1항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

제36조제1항제1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제1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이하 "물질안전보건자료"라 한다)"를 "물질안전보건자료"로 한다.

제37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법 제2조제10호의3에 따른 유해성미확인물질의 유해성 정보가 확인된 경우

제38조제3항 단서 중 "유해화학물질"을 "인체등유해성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로 한다.

제40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유독물질"을 각각 "인체등유해성물질"로 한다.

제4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 국립환경과학원장, 화학물질안전원장 또는"을 "첨부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및 같은 조 제4항 중 "지방환경관서의 장, 국립환경과학원장, 화학물질안전원장 또는 공단"을 각각 "공단"으로 한다.

제51조의 제목 "(화학물질 정보의 공개 등)"을 "(화학물질 정보의 공개)"

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42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은 법 제19조의3에 따른 자료의 적정성을 검토한 화학물질을 말한다.

② 화학물질안전원장은 법 제10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등록된 화학물질(제12조에 따라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된 경우를 포함한다)의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법 제42조에 따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1. 화학물질의 명칭 및 고유번호

2. 화학물질의 용도분류체계에 따른 용도

3.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4. 등록의 형태

5. 화학물질의 물리적·화학적 특성 및 유해성에 관한 시험의 목적, 방법, 결과·결론을 요약한 시험요약서

6. 취급 시 주의사항 등 안전사용에 관한 내용

③ 공단의 이사장은 다음 각호에 따라 화학물질의 정보를 법 제42조에 따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1.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된 기존화학물질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정보

가. 화학물질의 명칭 및 고유번호

나. 화학물질별 최대 제조·수입량의 범위

다.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라. 화학물질의 용도 중 소비자 용도의 해당여부 등

2.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신고된 신규화학물질(제12조에 따라 변경신고된 경우를 포함한다)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정보

가. 화학물질의 명칭 및 고유번호

나. 화학물질의 용도분류체계에 따른 용도

다.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및 작성사유

④ 화학물질안전원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유해성심사 또는 법 제19조에 따라 유해성평가를 실시한 화학물질의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법 제42조에 따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1. 인체등유해성물질 해당 여부

2. 유해성에 관한 결과

⑤ 공단의 이사장은 법 제19조의3에 따른 자료의 적정성을 검토한 화학물질의 화학물질 분류·표시 자료의 검토 결과를 법 제42조에 따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⑥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24조에 따라 위해성평가를 실시한 화학물질의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법 제42조에 따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1.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해당 여부

2. 위해성에 관한 결과

⑦ 화학물질안전원장과 공단의 이사장은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화학물질의 명칭이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자료보호 대상인 경우에는 그 자료보호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는 총칭명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5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1조의2(공개된 화학물질 정보의 수정 또는 보완)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공개된 화학물질의 유해성 등의 정보의 수정 또는 보완(이하 “수정등”이라 한다)을 요청할 수 있다.

1. 공개된 유해성 정보보다 신뢰성이 높거나 같은 자료가 있는 경우
2. 공개된 유해성 항목 외에 새로운 유해성 항목에 대한 자료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수정등의 요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신청서에 해당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공단의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단의 이사장은 해당 물질의 유해성 등에 관한 정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제2항에 따라 수정등을 요청한 자에게 알려주고, 자료의 적정성이 인정되는 경우 보완의 방식으로 관련 정보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법 제10조에 따라 해당 물질을 등록 또는 신고한 자 및 국립환경과학원장과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④ 국립환경과학원장(제1호로 한정한다) 또는 화학물질안전원장(제2호로 한정한다)은 제3항에 따른 검토 결과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다

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제24조에 따른 위해성평가의 실시 및 위해성평가 결과의 수정

2. 제19조에 따른 유해성평가의 실시 및 제18조에 따른 유해성심사 결과 또는 제19조에 따른 유해성평가 결과의 수정

제5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환경부장관, 국립환경과학원장, 화학물질안전원장”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표 제2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제1호부터 제9호까지로 하며, 같은 표 제1호(종전의 제2호)의 각 표 외의 부분 중 “제출해야”를 “제출하여야”로 하고, 같은 호 비고를 다음과 같이 한다.

비고: 나목2)의 복귀돌연변이에 관한 시험결과가 양성인 경우에는 제2호 나목3) 및 같은 목 4)의 시험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비고: 나목2)의 복귀돌연변이에 관한 시험결과가 양성인 경우에는 제2호 나목3) 및 같은 목 4)의 시험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별표 1 제2호(종전의 제3호) 중 “제2호가목”을 “제1호가목”으로 하고, 같은 호 별표 3의3의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표 제4호(종전의 제5호) 중 “제2호부터 제4호”를 “제1호부터 제3호”로 하고, 같은 호 나목2) 중 “육생식물”을 “육생 식물”로 한다.

별표 1 제4호(종전의 제5호) 비고 별표 3의3의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5호(종전의 제6호) 중 “제5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1톤 이상 10톤 미만

별표 1 제5호(종전의 제6호) 가목의 시험자료란 중 “제1호가목에 따른”을 “제1호1)가)부터 마)까지의”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10톤 이상 100톤 미만

별표 1 제5호(종전의 제6호) 나목의 시험자료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목에 따른 시험자료, 제1호2)가) 및 나), 제1호3)가) 및 나) 또는 나) 및 다)에 따른 시험자료

별표 1 제5호(종전의 제6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100톤 이상 1,000톤 미만

별표 1 제5호(종전의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 |
|---|---|
| 라. 1,000톤 이상 | |

별표 1 제5호(종전의 제6호)에 1)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
|---|---|
| 1) 별표 3의3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제1호에 따른 시험자료 |

별표 1 제5호(종전의 제6호) 및 1)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호 라목2)의 시험자료란 중 “제3호”를 “제2호”로 하며, 같은 호 비고의 1) 가목 제조·수입량 구분란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1톤 이상 10톤 미만

별표 1 제5호(종전의 제6호) 비고의 1) 가목의 시험자료란 중 “제1호가목”을 “제1호1)”로 하고, 같은 비고 1) 나목 제조·수입량 구분란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10톤 이상 100톤 미만

별표 1 제5호(종전의 제6호) 비고의 1) 나목의 시험자료란 중 “제2호1)”을 “가목에 따른 시험자료 및 제2호가목”으로 하고, 같은 비고 1) 다목 제조·수입량 구분란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비고 1) 라목 제조·수입량 구분란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100톤 이상 1,000톤 미만

라. 1,000톤 이상

별표 1 제5호(종전의 제6호) 비고의 1) 라목의 시험자료란 중 “제4호가목”을 “제1호2) 및 3)”으로 하고, 같은 비고 1)를 삭제하며, 같은 표 제8호(종전의 제9호) 본문 중 “제8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표 제9호(종전의 제10호) 중 “제8호”를 “제7호”로 한다.

별표 1의2 및 별표 7의2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4호서식 앞쪽 중 “[ ] 0.1톤 이상 1톤 미만 [”를 “[”로 한다.

별지 제5호의3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호의4서식 앞쪽 중 “화 학 물 질 안 전 원”을 “한 국 환 경 공 단 이 사”로 한다.

별지 제5호의5서식 중 “화 학 물 질 안 전 원”을 “한 국 환 경 공 단 이 사”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중 “[ ] 0.1톤 이상 1톤 미만 [”를 “[”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 |
|---|---|---|
| 첨부서류 | 1. 국외제조·생산자에 의한 선임사실 신고증 1부(「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국외제조·생산자가 선임한 자가 문의하는 경우에 제출합니다)<br>2.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을 증명하는 서류 1부(화학물질을 위탁하여 제조하는 자가 문의하는 경우에 제출합니다) | 수수료<br>없 음 |

## 작성방법

1. ①란~⑩란은 등록 여부 문의 이후 등록신청을 하려는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적습니다. ⑤란에서 해당하는 항목은 모두 표시합니다.
2. ⑥란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제3호 및 별표 2에 따른 화학물질 용도분류체계를 적습니다.
3. ⑦란은 등록신청하는 화학물질의 주요 용도를 적습니다.
4. ⑧란은 사용하지 말아야 할 용도는 확인된 경우에만 적습니다.
5. ⑨란의 상품의 물리적 형태 및 용도, ⑩란의 상품 내 함량(%)은 등록신청하는 화학물질이 함유된 대표적인 상품에 관한 정보를 적습니다.
6. ⑪란~⑮란은 신청인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선임된 자인 경우 모든 수입자의 정보를 적습니다. 다만, ⑮란에는 모든 수입자가 수입한 총량을 적을 수 있습니다.
7. ⑯란은 신청인이 위탁한 자인 경우 모든 수탁자의 정보를 적습니다.

## 처리절차

문의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확인통지서 발급

| 신청인 | 화학물질안전원 | 화학물질안전원 | 화학물질안전원 | 화학물질안전원 |
|---|---|---|---|---|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25호서식 및 별지 제26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3호서식의 신청인을 다음과 같이 한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 첨부서류 | 1.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9조제1항의 요건 증명서류 1부<br>2. 선임계약서 사본 등 선임(해임) 여부 확인 증명서류 1부 |
|---|---|

작성방법

별지 제33호서식 중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안전원, 유역(지방)환경청, 한국환경공단”을 “한국환경공단”으로 하고, 같은 서식 중 “처리기관”을 각각 “한국환경공단”으로 한다.

별지 제34호서식 및 별지 제37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 8. 7.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3, 제11조의2, 제15조의3, 제49조, 제52조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화학물질 변경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변경등록신청을 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10조제1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에 따른다.

[별표 1의2]

## 유해성미확인물질의 기준 등(제2조의2 관련)

1. 유해성미확인물질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을 말한다. 다만, 고분자화합물은 제외한다.
   가. 급성경구독성을 확인하지 못한 화학물질. 다만, 상온에서 기체거나 용도상으로 주된 노출경로가 흡입으로 판단되는 경우 급성흡입독성을 확인하지 못한 화학물질
   나. 피부부식성을 확인하기 곤란한 화학물질
   다. 복귀돌연변이 및 포유류 배양세포를 이용한 염색체 이상을 모두 확인하지 못한 화학물질
   라. 어류급성독성, 물벼룩급성독성 및 담수조류 생장저해를 모두 확인하지 못한 화학물질
   마. 이분해성을 확인하지 못한 화학물질

2. 제1호다목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은 제1호다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생식세포 변이원성, 발암성 또는 생식독성을 확인한 화학물질
   나. 시험동물을 이용한 체세포 유전독성의 시험결과를 확인한 화학물질

3. 제1호마목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은 제1호마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물용해도가 1㎎/L 미만인 화학물질
   나. 영 별표 2 제33호에 따른 중간체(Intermediates) 또는 같은 표 제43호에 따른 공정속도조절제(Process regulators)의 용도로만 사용하려는 화학물질
   다. 무기물인 화학물질

4. 제1호 각목을 확인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자료는 소유하거나 확인한 시험자료(비시험자료도 포함한다)를 말한다.

[별표 7의2]

화학물질 분류·표시 자료의 검토 방법(제26조의2 관련)

1. 공단의 이사장은 법 제19조의3에 따라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자료를 검토하는 경우 국내외의 관련 심사·평가·시험 등 결과를 조사하여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가.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신고된 자료 외에 해당 화학물질의 유해성에 관한 자료가 추가적으로 있는지 여부

   나. 해당 화학물질의 유해성에 관한 자료를 추가적으로 확인한 경우 그 자료의 신뢰성

   다.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신고된 자료보다 신뢰성이 높거나 같은 자료를 확인한 경우 추가적인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는 화학물질의 분류·표시가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신고된 분류·표시와 동일한지 여부

2. 국내외의 관련 심사·평가·시험 등 결과를 조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화학물질의 유해성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공단의 이사장은 다음 각 목의 절차를 수행할 수 있다.

   가. 국제적으로 인정된 구조 활성관계 예측 프로그램(QSAR)으로부터 얻어진 결과를 통해 화학물질의 분류 예측

   나. 같은 금속을 포함하는 금속화합물 등 구조와 물리적·화학적 특성이 유사한 화학물질로부터 얻어진 결과를 통해 화학물질의 분류 예측

3.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구체적인 검토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단의 이사장이 정한다.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3서식]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kreach.me.go.kr)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규화학물질 [ ] 제조 [ ] 신고서 [ ] 수입 [ ] 변경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고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
| | | |

| | | |
|---|---|---|
| 신고인 (법 제38조에 따라 선임된 자 또는 위탁한 자 포함) | 상호(명칭) |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 | 성명(대표자) |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br>(전자우편: ) |
| | 소재지(사업장)<br>(전화번호: / 팩스번호: ) | |

| | | | | |
|---|---|---|---|---|
| 신고사항 | ①화학물질명 (총칭명) | | | |
| | 고유번호 (CAS No. 등 화학물질 식별번호) | | 순도(%) | |
| | 분자식・구조식 | | | |
| | ②상품명 | | ③확인된 불순물・부산물 | |
| | ④연간 제조(수입)예정량(kg) | | | |
| | ⑤분류・표시 | 분류 (작성 사유) | | |
| | | 표시사항 | | |
| | 용도 | ⑥분류체계 | | |
| | | ⑦범주 및 구체적 용도 | [ ] 산업적/전문적 용도 ( )<br>[ ] 소비자 용도 ( ) | |
| | 유해성미확인물질 여부 | [ ] 해당 (미확인 영역: [ ] 급성경구독성 또는 급성흡입독성, [ ] 피부부식성, [ ] 복귀돌연변이 또는 포유류 배양세포를 이용한 염색체 이상, [ ] 어류급성독성, 물벼룩급성독성 또는 조류급성독성, [ ] 이분해성)<br>[ ] 해당없음 | | |
| | 자료보호신청 여부 | [ ] 해당 [ ] 해당없음 | | |

| | | |
|---|---|---|
| ⑧변경신고사항 | 변경 전 | 변경 후 |
| | | |

| | | | | | |
|---|---|---|---|---|---|
| 수입자 (신고인이 법 제38조에 따라 선임된 자인 경우) | ⑨상호(명칭) | ⑩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⑪대표자 | ⑫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 ⑬수입국 |
| | | | | | |

| | | | | | |
|---|---|---|---|---|---|
| ⑭수탁자 (신고인이 위탁한 자인 경우) | 상호(명칭)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대표자 |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 사업장 소재지 |
| | | | | | |

(뒤쪽)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 ] 제10조제4항 [ ]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 제6조의3제1항 [ ] 제11조의2제2항 에 따라 [ ] 제조 [ ] 수입 하려는 신규화학물질을 [ ] 신고 [ ] 변경신고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
|---|---|---|
| 첨부서류 | 1. 신고의 경우<br>가. 국외제조·생산자에 의한 선임사실 신고증 1부(「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국외제조·생산자가 선임한 자가 신고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br>나. 자료보호신청서(「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에 따라 자료보호를 요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br>다.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을 증명하는 서류 1부(화학물질의 제조를 위탁하는 자가 신고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br>라.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법률 제11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합니다) 제12조에 따른 유해성심사 면제확인 결과 통지서(「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4항제2호에 따른 신규화학물질을 신고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br>마.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4호의2에 따른 서류 중 소유하고 있는 서류<br>2. 변경신고의 경우: 변경된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수수료<br><br>신고:<br>100,000원<br>(중기업은<br>50,000원,<br>소기업은<br>20,000원)<br><br>변경신고:<br>30,000원<br>(중기업은<br>15,000원,<br>소기업은<br>6,000원) |
| 담당자 확인사항 | 1. 사업자등록증명(개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br>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자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자 확인 사항 중 제1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작성방법

1. ①란은 화학물질명을 적습니다. 다만, 해당 화학물질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에 따라 자료보호 요청하는 경우에는 총칭명을 적습니다.
2. 순도(%)를 과학적 시험방법 등으로 정확히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최소값과 최대값의 범위로 적을 수 있습니다.
3. ②란은 신고 또는 변경신고하는 화학물질이 함유된 대표적인 상품에 관한 정보를 적습니다.
4. ③란의 불순물은 우연히 또는 비의도적으로 다른 화학물질에 생성되거나 존재하는 성분으로서 그 자체로 수입 또는 시장에 출시되지 않는 물질을 말하고, 부산물은 의도한 화학물질의 제조과정에서 비의도적으로 함께 생성되는 물질로서 그 자체로 수입 또는 시장에 출시되지 않는 물질을 말합니다.
5. ④란은 신고 당시 해당 연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연간 제조 또는 수입량을 예상하여 적습니다.
6. ⑤란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7에 따른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사항을 적습니다.
7. ⑥란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화학물질 용도분류체계를 적습니다.
8. ⑦란의 소비자 용도에서 사업장에서만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두 가지 항목에 모두 해당하면 두 가지 항목 모두 표시·작성합니다. 이 경우 괄호에는 각 용도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용도를 작성합니다.
9.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신고인란 및 ⑧란의 변경신고 사항란만 작성할 수 있습니다.
10. ⑨란~⑬란은 신고인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선임된 자인 경우 모든 수입자의 정보를 적습니다. ⑬란에는 여러 수입국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11. ⑭란은 신고인이 위탁한 자인 경우 모든 수탁자의 정보를 적습니다.

## 처리절차

| 신고서 또는 변경신고서 작성 | ⇒ | 접수 | ⇒ | 검토 | ⇒ | 신고통지서 작성 또는 수리 | ⇒ | 신고통지서 발급 |
|---|---|---|---|---|---|---|---|---|
| 신고인 | | 한국환경공단 | | 한국환경공단 | | 한국환경공단 | | 한국환경공단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kreach.me.go.kr)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개정 2024. 10. 10.>

<table>
<tr><td colspan="2">심사번호<br>제 호</td><td colspan="4">유해성심사 결과통지서</td></tr>
<tr><td rowspan="3">신청인</td><td>상호(명칭)</td><td colspan="2"></td><td>사업자등록번호<br>(법인등록번호)</td><td></td></tr>
<tr><td>대표자 성명</td><td colspan="4"></td></tr>
<tr><td>사업장 소재지</td><td colspan="4"></td></tr>
<tr><td colspan="2">화학물질명<br>(총칭명, CAS No. 등 화학물질 식별번호)</td><td colspan="4"></td></tr>
<tr><td colspan="2">등록번호</td><td colspan="4"></td></tr>
<tr><td rowspan="6">심사결과</td><td>인체등유해성물질 해당 여부</td><td colspan="4">[ ]해당 ([ ] 인체급성유해성물질( %), [ ] 인체만성유해성물질( %),<br>[ ] 생태유해성물질 ( %) )<br>* ( %)는 혼합물 중 함량 한계임<br>[ ] 해당 없음 [ ] 기타</td></tr>
<tr><td colspan="5">표시내용</td></tr>
<tr><td rowspan="2">표시내용</td><td>유해성 분류</td><td>그림문자와 신호어</td><td colspan="2">유해・위험문구</td></tr>
<tr><td></td><td></td><td colspan="2"></td></tr>
<tr><td>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td><td colspan="4"></td></tr>
<tr><td>비고</td><td colspan="4"></td></tr>
</table>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라 심사 결과를 통지합니다.

이 심사 결과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화 학 물 질 안 전 원 장** 직인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kreach.me.go.kr)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제 호

# 국외 제조(생산)자에 의한 선임(해임) 사실 신고증

1. 상호(명칭) :
2. 사업자등록번호 :
3. 성명(대표자) :
4. 소재지(사업장) :
5. 신고내용 : [ ] 선임 [ ] 해임
6. 국외 제조(생산)자 또는 최종 수출자 :
7. 제품명 등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제4항에 따라 화학물질 또는 제품의 국외 제조(생산)자는 수입자를 갈음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를 신고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한 국 환 경 공 단 이 사 장 직인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서식]

# 화학물질 유해성 공개자료의 수정 보완신청서(제51조의2 관련)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청구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접수번호 | | 접수일시 | | 처리기간 | |
|---|---|---|---|---|---|
| 신청인 | 성명<br>(상호 및 대표자 성명) | | 생년월일 | | |
| | 주소(소재지) | | 법인등록번호<br>(사업자등록번호) | | |
| | 전화번호 | | 전자우편 | | |

한국환경공단은 「보안업무규정」 제46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및「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및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에 따라 신원조사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개인정보,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 항목 | 성명, 소속, 연락처(전화, 이메일주소) |
|---|---|
| 수집·이용 목적 | 신원 확인 및 수정·보완에 따른 결과 회신 |
| 보유·이용 기간 | 2년 |

※ 위 내용은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필수 정보에 해당하며 그 내용에 관하여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수정·보완 신청 및 그 결과를 회신 받을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 신청대상 | 정보 구분 | [ ] 유해성 정보 [ ] 기타 정보 |
|---|---|---|
| | 화학물질 식별번호<br>(CAS No. 등) | |
| 신청사항 | | |
| 신청사유 | |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1조의2에 따라 공개된 화학물질 유해성 정보에 대한 수정·보완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 첨부서류 | 신청사항 및 신청사유를 입증하는 자료 | 수수료 없음 |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 --- |
| <신 설> | 제2조의2(유해성미확인물질의 기준) 법 제2조제10호의3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1의2에 해당하는 기준을 말한다. |
| 제6조의3(신규화학물질의 신고) ①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신규화학물질의 제조 또는 수입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의3서식의 신규화학물질 제조·수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4호의2에 따른 서류 중 해당 신규화학물질의 신고인이 소유하고 있는 서류는 제출할 수 있다. | 제6조의3(신규화학물질의 신고) ① ----------<br>----------<br>----------<br>----------<br>----------<br>-------- 공단의 이사장-----<br>----------. --------<br>----------<br>----------<br>---------- 소유하거나 확인한 ----------<br>---. |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 | ② ----------<br>담당자는 ----------<br>----------<br>----------<br>---------- |

| | |
|---|---|
| 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 ----------. ---------- ---------- ---------- ---------- ---. |
| ③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별지 제5호의4서식의 신규화학물질 신고통지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 ③ 공단의 이사장---------- ---------- ---------- ---------- ---------- ---. |
| ④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신고자료를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수정·보완사항 및 제출기간을 적어 별지 제5호의5서식의 신규화학물질 신고자료 수정·보완통지서에 따라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수정·보완을 요청한 날부터 그에 따른 자료를 제출한 날까지의 기간은 제3항에 따른 기간에서 제외한다. | ④ 공단의 이사장---------- ---------- ---------- ---------- ----------. ---------- ---------- ---------- ---------- ------. |
| ⑤ 제4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신고인은 제출기간 이내에 수정 | ⑤ ---------- ---------- |

| | |
|---|---|
| ・보완한 자료를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br><신 설> | ---------- 공단의 이사장----------.<br>⑥ 연간 100킬로그램 이상 1톤 미만의 신규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기 위하여 2025년 1월 1일 이전에 법 제10조제6항에 따라 화학물질을 등록신청하여 등록이 완료된 자는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본다. |
| 제11조의2(신고한 자의 변경신고 등) ①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신규화학물질의 제조・수입을 신고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2조제3항제3호에 따라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br>1.・2. (생 략)<br>3. 신고한 화학물질의 특성, 유해성 또는 위해성이 변경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br>가.・나. (생 략)<br><신 설> | 제11조의2(신고한 자의 변경신고 등) ① ----------<br>----------<br>----------<br>----------<br>----------<br>----------.<br>1.・2. (현행과 같음)<br>3. ----------<br>------- 위해성에 관한 정보가 새로 확인된 ----------<br>----------<br>가.・나. (현행과 같음)<br>다. 유해성미확인물질 중 화학물질의 특성 또는 유해성에 관한 새로운 정보가 확인되어 제2조의2에 따른 |

| | |
|---|---|
| | 유해성미확인물질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
| 4.·5. (생 략) | 4.·5. (현행과 같음) |
| ②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의3서식의 신규화학물질 제조·수입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사실이 발생한 날(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사실을 안 날을 말한다)부터 1개월 이내에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② ----------<br>----------<br>----------<br>----------<br>----------<br>----------<br>----------<br>----------<br>---------- 공단의 이사장----------. |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 ③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제출받은 신규화학물질 신고통지서 뒤쪽에 변경사항을 적어 신고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 ③ 공단의 이사장----------<br>----------<br>----------<br>----------<br>----------<br>----------<br>----------<br>----------. |
| 제15조의3(신규화학물질의 신고자료) 법 제14조제6항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 제15조의3(신규화학물질의 신고자료) ----------<br>---------- |

| | |
|---|---|
| 법 제14조제1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자료 중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가 소유한 자료를 말한다. | ---------- ---------- ---------- 소유하거나 확인한 자료(그 출처를 포함한다)----. |
| 제25조(유해성심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 명령) ① 화학물질안전원장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 등록 또는 변경등록한 자에게 별지 제18호서식의 자료제출명령서에 따라 자료의 제출기한을 정하여 유해성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기한은 해당 자료의 생산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기한으로 한다. | 제25조(유해성심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 명령) ① ---------- ---------- ---------- ---------- ---------- ---------- ----------. ---------- ---------- ---------- ---------- ----------. |
| 1.·2. (생 략) | 1.·2. (현행과 같음) |
| 3. 법 제10조제1항·제5항에 따라 등록된 화학물질이 유해화학물질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3. ---------- ---------- 법 제2조제6호부터 제6호의3까지에 따른 인체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및 생태유해성물질(이하 “인체등유해성물질”이라 한다) 중 어느 |

| | |
|---|---|
| | 하나--- |
| 4. (생 략) | 4. (현행과 같음)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신 설> | 제26조의2(신고 시 제출된 화학물질 자료의 검토 등) ① 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자료의 검토 방법은 별표 7의2와 같다 |
| | ② 공단의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19조의3제2항에 따라 유해성 시험자료를 생산할 수 있다. |
| | 1. 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 분류·표시 자료의 검토 결과 유해성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화학물질로서 유해성평가에 필요한 신뢰성 있는 시험결과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등록대상화학물질로 지정하여 해당 시험결과를 기업이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 한정한다) |
| | 2. 그 밖에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신고된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

| | |
|---|---|
| | 위하여 공단의 이사장이 유해성 시험자료의 생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br>③ 공단의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적정성 검토 결과를 해당 물질을 신고한 자 및 국립과학원장과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알려주어야 한다.<br>④ 공단의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적정성 검토 결과 중 국내외 정부 또는 국제기구에서 공개한 유해성 평가 결과를 통하여 확인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대한 유해성정보가 있을 경우 해당 물질을 신고한 자에게 이를 활용하여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 제34조(위해성평가에 필요한 자료 제출 명령)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등록 또는 변경등록한 자에게 별지 제24호서식의 자료제출명령서에 따라 자료의 제출기한을 정하여 위해성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 제34조(위해성평가에 필요한 자료 제출 명령) ① ---------- ---------- ---------- ---------- ---------- ---------- ---------- |

| | |
|---|---|
|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기한은 해당 자료의 생산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기한으로 한다. | ----------. ---------- ---------- ---------- ---------- ---------- ----------.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 2. 법 제10조에 따라 등록된 화학물질이 유해화학물질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2. ---------- ------ 법 제2조제7호부터 제9호까지에 따른 허가물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 -----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제35조(화학물질의 정보제공) ① 법 제29조제1항 본문에서 “해당 화학물질의 등록번호, 명칭, 유해성 및 위해성에 관한 정보, 안전사용정보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이하 “화학물질안전정보”라 한다)를 말한다. | 제35조(화학물질의 정보제공) ① ---------- ---------- ---------- ---------- ---------- ---------- ----------. |
| 1. ~ 7. (생 략) | 1. ~ 7. (현행과 같음) |
| 8. 유해화학물질이 함유된 경우 함유량 등의 정보 | 8. 인체등유해성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 ---------- |
| 9.·10. (생 략) | 9.·10. (현행과 같음) |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 ② ---------- |

| | |
|---|---|
|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화학물질의 구성성분, 함유량 등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안전정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화학물질이 유해화학물질 또는 법 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화학물질로서 별표 7에 따라 물리적 위험성, 건강 유해성 또는 환경 유해성이 있는 것으로 분류되는 함량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 ----------. |
| 1. 별표 7에 따라 건강 유해성 또는 환경 유해성이 있는 것으로 분류되는 화학물질에 대하여 제35조의2에 따라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 1. 다음 각 목의 ---------- |
| <신 설> | 가. 별표 7에 따라 건강 유해성 또는 환경 유해성이 있는 것으로 분류되는 화학물질 |

| | |
|---|---|
| <신 설> | 나. 유해성미확인물질 |
| 2. (생 략) | 2. (현행과 같음) |
| ③·④ (생 략) | ③·④ (현행과 같음) |
| <신 설> | ⑤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유해성미확인물질이 들어있는 혼합물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별표 7에 따라 건강 유해성 또는 환경 유해성이 있는 것으로 분류되는 함량 기준 미만 함유된 경우에는 제1항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 |
| 제36조(화학물질의 정보제공 방법 등) ① 화학물질안전정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작성하여 제공한다. | 제36조(화학물질의 정보제공 방법 등) ① ----------. |
| 1.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제1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이하 “물질안전보건자료”라 한다)를 작성·제출하지 않는 경우: 별지 제25호서식의 화학물질안전정보 자료의 제공 | 1. 물질안전보건자료---------- |
| 2. (생 략) | 2. (현행과 같음) |
| ②·③ (생 략) | ②·③ (현행과 같음) |
| 제37조(변경된 정보제공 방법 등) | 제37조(변경된 정보제공 방법 등) |

| | |
|---|---|
| 법 제29조제3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변경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 ----------. |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 <신 설> | 5. 법 제2조제10호의3에 따른 유해성미확인물질의 유해성 정보가 확인된 경우 |
| 제38조(하위사용자 등의 정보제공) ①·② (생 략) | 제38조(하위사용자 등의 정보제공) ①·② (현행과 같음) |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의 구성성분이나 함유량 등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화학물질안전정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이 유해화학물질 또는 법 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화학물질로서 별표 7에 따라 물리적 위험성, 건강 유해성 또는 환경 유해성이 있는 것으로 분류되는 함량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 ③ ----------. ---------- 인체등유해성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 |

| | |
|---|---|
| ④ (생 략) | ④ (현행과 같음) |
| 제40조(정보제공을 위한 통보방법 및 절차)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제2호로 한정한다) 또는 화학물질안전원장(제1호 및 제3호로 한정한다)은 법 제3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 법 제10조에 따라 등록한 자와 법 제32조에 따라 신고한 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제40조(정보제공을 위한 통보방법 및 절차) ① ----------<br>----------<br>----------<br>----------<br>----------<br>----------<br>----------<br>----------<br>----------. |
| 1.·2. (생 략) | 1.·2. (현행과 같음) |
| 3. 해당 화학물질이 유독물질로 지정되거나 변경지정된 경우 | 3. ---------- 인체등유해성물질---------- |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장 또는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제1항에 따라 통지한 것으로 본다. | ② ----------<br>----------<br>----------<br>----------<br>----------.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 2. 법 제20조, 제25조제1항 또는 제27조제1항에 따른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의 지정·고시 | 2. ----------<br>---------- 인체등유해성물질---------- |
| 3.·4. (생 략) | 3.·4. (현행과 같음) |
| 제49조(국외제조·생산자가 선임한 자의 요건 등) ① (생 략) | 제49조(국외제조·생산자가 선임한 자의 요건 등) ① (현행과 같 |

| | |
|---|---|
| | 음) |
| ②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선임 또는 해임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선임서 또는 해임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 국립환경과학원장, 화학물질안전원장 또는 공단의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br>----------<br>----------<br>----------<br>첨부하여 ----------<br>----------<br>----------<br>----------. |
| 1.·2. (생 략) | 1.·2. (현행과 같음) |
| ③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 국립환경과학원장, 화학물질안전원장 또는 공단의 이사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 ③ ----------<br>공단----------<br>----------<br>----------<br>----------<br>----------<br>----------<br>----------. ---<br>----------<br>----------<br>----------<br>-------. |
| ④ 지방환경관서의 장, 국립환경과학원장, 화학물질안전원장 또는 공단의 이사장은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 ④ 공단----------<br>----------<br>----------<br>---------- |

| | |
|---|---|
| 이내에 별지 제34호서식의 신고증을 내주어야 한다. | ----------. |
| 제51조(화학물질 정보의 공개 등)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제4호의2 및 제6호의2로 한정한다) 또는 화학물질안전원장(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5호, 제6호 및 제7호로 한정한다)은 법 제4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화학물질의 명칭이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자료보호 대상인 경우에는 그 자료보호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는 총칭명으로 공개하여야 한다.<br>1. 화학물질의 명칭 및 고유번호<br>2. 화학물질의 용도분류체계에 따른 용도<br>3.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br>4. 유독물질 해당 여부<br>4의2.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해당 여부<br>5. 물리적·화학적 특성에 관한 결과<br>6. 유해성에 관한 결과 | 제51조(화학물질 정보의 공개) ① 법 제42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은 법 제19조의3에 따른 자료의 적정성을 검토한 화학물질을 말한다. |

| | |
|---|---|
| 6의2. 위해성에 관한 결과<br>7. 취급시 주의사항 등 안전사용에 관한 내용<br>② 공단의 이사장은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된 화학물질의 명칭, 화학물질별 최대 제조·수입량의 범위,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화학물질의 용도 중 소비자 용도의 해당 여부 등에 관한 정보를 법 제42조에 따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 ② 화학물질안전원장은 법 제10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등록된 화학물질(제12조에 따라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된 경우를 포함한다)의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법 제42조에 따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br>1. 화학물질의 명칭 및 고유번호<br>2. 화학물질의 용도분류체계에 따른 용도<br>3.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br>4. 등록의 형태<br>5. 화학물질의 물리적·화학적 특성 및 유해성에 관한 시험의 목적, 방법, 결과·결론을 요약한 시험요약서<br>6. 취급 시 주의사항 등 안전사용에 관한 내용 |
| <신 설> | ③ 공단의 이사장은 다음 각호에 따라 화학물질의 정보를 법 제42조에 따라 홈페이지 등을 |

| | | |
|---|---|---|
| | | 통해 공개해야 한다. |
| | | 1.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된 기존화학물질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정보 |
| | | 가. 화학물질의 명칭 및 고유번호 |
| | | 나. 화학물질별 최대 제조·수입량의 범위 |
| | | 다.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
| | | 라. 화학물질의 용도 중 소비자 용도의 해당여부 등 |
| | | 2.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신고된 신규화학물질(제12조에 따라 변경신고된 경우를 포함한다)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정보 |
| | | 가. 화학물질의 명칭 및 고유번호 |
| | | 나. 화학물질의 용도분류체계에 따른 용도 |
| | | 다.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및 작성사유 |
| <신 설> | | ④ 화학물질안전원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유해성심사 또는 법 제19조에 따라 유해성평가를 실시한 화학물질의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법 제42조에 따라 홈페 |

| | | |
|---|---|---|
| | | 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
| | | 1. 인체등유해성물질 해당 여부 |
| | | 2. 유해성에 관한 결과 |
| <신 설> | | ⑤ 공단의 이사장은 법 제19조의3에 따른 자료의 적정성을 검토한 화학물질의 화학물질 분류·표시 자료의 검토 결과를 법 제42조에 따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
| <신 설> | | ⑥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24조에 따라 위해성평가를 실시한 화학물질의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법 제42조에 따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
| | | 1.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해당 여부 |
| | | 2. 위해성에 관한 결과 |
| <신 설> | | ⑦ 화학물질안전원장과 공단의 이사장은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화학물질의 명칭이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자료보호 대상인 경우에는 그 자료보호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는 총칭명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
| <신 설> | | 제51조의2(공개된 화학물질 정보 |

| | |
|---|---|
| | 의 수정 또는 보완)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공개된 화학물질의 유해성 등의 정보의 수정 또는 보완(이하 “수정등”이라 한다)을 요청할 수 있다.<br>1. 공개된 유해성 정보보다 신뢰성이 높거나 같은 자료가 있는 경우<br>2. 공개된 유해성 항목 외에 새로운 유해성 항목에 대한 자료가 있는 경우<br>② 제1항에 따라 수정등의 요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신청서에 해당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공단의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br>③ 공단의 이사장은 해당 물질의 유해성 등에 관한 정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제2항에 따라 수정등을 요청한 자에게 알려주고, 자료의 적정성이 인정되는 경우 보완의 방식으로 관련 정보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

| | |
|---|---|
| | 법 제10조에 따라 해당 물질을 등록 또는 신고한 자 및 국립환경과학원장과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알려주어야 한다.<br>④ 국립환경과학원장(제1호로 한정한다) 또는 화학물질안전원장(제2호로 한정한다)은 제3항에 따른 검토 결과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br>1. 제24조에 따른 위해성평가의 실시 및 위해성평가 결과의 수정<br>2. 제19조에 따른 유해성평가의 실시 및 제18조에 따른 유해성심사 결과 또는 제19조에 따른 유해성평가 결과의 수정 |
| 제52조(출입·검사) ① (생 략) | 제52조(출입·검사) ① (현행과 같음) |
| ② 환경부장관, 국립환경과학원장, 화학물질안전원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43조에 따라 사업장 등에 대한 출입·검사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입·검사의 대상 시설 또는 사업장 등이 | ② 환경부장관 ---------- ---------- ---------- ---------- ---------- ---------- ---------- |

| | |
|---|---|
| 같은 곳인 경우에는 통합하여 출입·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환경오염·광역감시 활동 또는 인력운영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br>----------. ---<br>----------<br>----------<br>----------<br>------. |
| 1. ~ 8. (생 략) | 1. ~ 8. (현행과 같음) |